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계획서



2015. 2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내용 요약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표본 추출틀	주민등록주소자료 (보건소 작성)		주민등록주소자료 (질병관리본부 작성) *국도해양부 건물유형 정보와 연계					
표본수	보건소당 평균 800명 (총 200,800명)		보건소당 평균 900명 (총 227,700명)					
조사 문항	1기 조사		2기 순환조사				3기 순환조사	
	핵심문항+ 선택문항	핵심문항	핵심문항 267개	핵심문항 250개	핵심문항 253개	핵심문항 258개	전국공통문항 166개+	전국공통문항 173개+
	360+40	300	1년 173 2년 45 4년 49	1년 178 2년 55 4년 17	1년 178 2년 45 4년 30	1년 176 2년 55 4년 27	지역선택문항 20여개	지역선택문항 20여개
조사 방법	종이조사표 면접조사 (PAPI)	종이조사표 면접조사 (PAPI) *전자조사표 (CAPI) 시범적용: 20개 지역	전자조사표 면접조사(CAPI)					
조사 시기	9.1-11.30	9.1-11.30	8.16-10.31					
자료 입력	웹 시스템 수동 입력 OMR입력자료 업로드		CAPI 입력자료 전송					
자료 검증	전화점검 책임대학교 자체실시		전화점검 제3기관 위탁실시					
책임 대학교	36개 책임대학교 14개 권역	35개 책임대학교 17개 권역			35개 책임대학교 18개 권역			
운영 체계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8 개)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3 개) 자문위원회 (필요 시)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5개) 자문위원회(필요 시)					
결과 공표	'09.3.25-26	'10.3.18-19	'11.3.30-31	'12.4.2-3	'13.3.21-22	'14.3.19-20	'15.3.26-27	'16.3월중
사업 예산	총액 4,896(백만 원) (국비 50% 보조) ※1인당 48,000원	총액 6,050(백만원) (국비 50% 보조) ※1인당 53,140원						총액 5,947(백만원) (국비 50% 보조) ※1인당 52,029원

※ 2007년 20개 시·군·구 시범사업 실시: 서울(10개), 전북(4개), 경남(6개)

차 례

I. 지역사회건강조사 기본계획

○ 추진배경	1
○ 추진목적	1
○ 추진과제	1
○ 추진체계	2
○ 수행절차	3

II.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 운영위원회 및 책임대학교위원회 개최	4
○ 전문기술위원회 개최	4
○ 조사기획	5
○ 조사수행 정도관리	5
○ 교육 및 홍보	5
○ 자료분석 및 통계작성	6
○ 연구사업	6

III.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결과

○ 조사완료현황	7
○ 분야별 수행결과	8
○ 향후 개선과제	9

IV.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계획

○ 추진방향	10
○ 분야별 세부추진방안	11
- 표본설계	11
- 조사지 개발	12
- 조사시기 및 방법	13
- 조사원 선발, 교육 및 관리	13
- 주민홍보	14
- 조사수행 및 지원	15
- 조사수행과정 질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개선	15
- 조사자료검증	15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16
- 조사장비 임대, 배포 및 수거	16
- 온라인 온라인지표뱅크 운영	17
- 통계자료공표	17
- 원시자료 공개	17
- 연구사업 추진계획	18
- 추진일정	19

V. 행정사항

○ 소요예산	20
○ 예산교부 및 집행	20
○ 총괄공통경비 지출	21
○ 협약체결	21
○ 개인정보 관리	22

VI. 2014년 결과보고대회

○ 행사개요	23
○ 주요내용	23
○ 보도계획(안)	24
○ 행정사항	24
○ 알림사항	24

【붙임 1】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25
【붙임 2】 2015년 책임대학교	30
【붙임 3】 2015년 책임대학교별 조사지역	32
【붙임 4】 2015년 시·군·구 보건소별 사업예산	34
【붙임 5】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협약서(예시)	42
【붙임 6】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 협약서	46
【붙임 7】 2015년 사업비 집행지침	47
【붙임 8】 조사장비대여	48
【붙임 9】 2014년 위탁기관 질관리 평가지표	49
【붙임 10】 책임대학교 담당자 보안서약서	50
【붙임 11】 조사원용 보안서약서	51
【붙임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규정	52
【붙임 1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54
【붙임 14】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활용 작성양식(안)	62

I

지역사회건강조사 기본계획

□ 추진배경

- 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 건강통계 부재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행체계 및 지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간 비교 불가능

□ 추진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동 법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등),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 통계청 승인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11775호(2008.9.12)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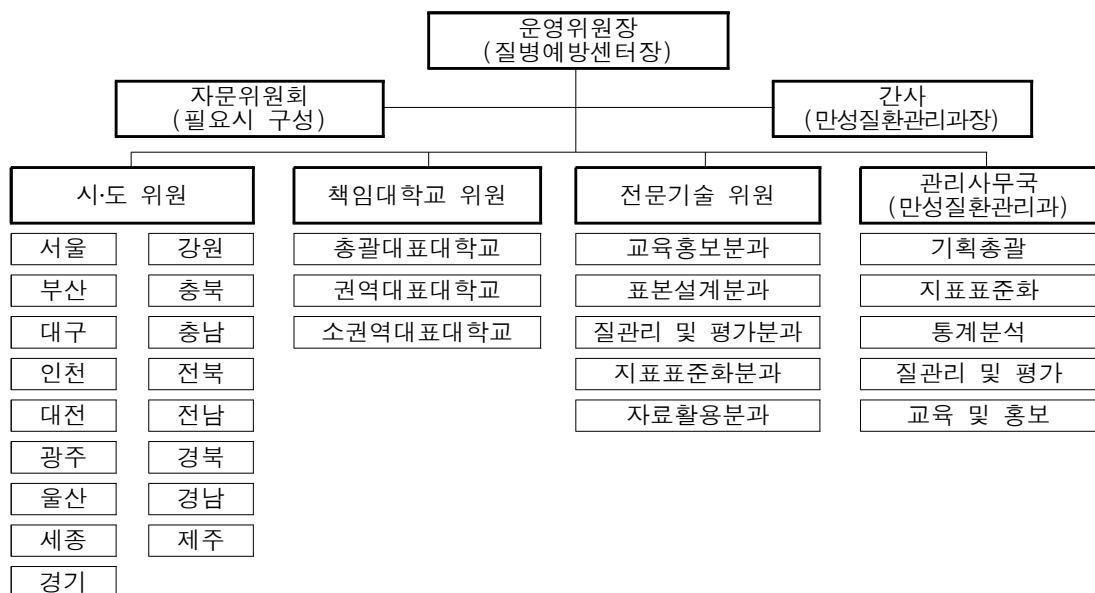
□ 추진과제

- 기초지자체(보건소 기준) 단위 건강면접조사 실시
 -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 및 관리수준 삶의 질 등 조사
 - 매년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집, 시·도 단위 비교통계집 발간과 공표
- 지역간 비교 가능토록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 표준화
 -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 표준화, 지역보건지표뱅크 구축
 - 조사수행 전 과정에 대한 질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조사관리, 자료수집 및 분석 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 시·도 및 보건소, 지역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 및 조사내실화
 - 지역사회건강조사 책임대학교를 지역 거점 센터로 육성
 - 권역별 대표대학을 중심으로 책임대학교간 컨소시엄 구성
 - 지역별 주요건강이슈 선정 및 관련 대책수립을 위한 협력
 -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만성병 관리 및 조사감시 FMTP」) 운영
- 지역별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지원
 - 지역별 결과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
 - 시·도별 공중보건학적 현안과 관련 대책수립에 대한 컨설팅

□ 추진체계

- (운영위원회) 질병관리본부, 17개 시·도, 17개 권역대표대학교, 전문기술위원으로 구성, 사업계획 확정 및 관련 주요사항 결정
- (관리사무국) 질병관리본부에 설치, 사업계획 수립, 조사수행 및 관리 지침 개발, 표본설계, 전산시스템 개발, 원시자료공개, 자료 분석 지원 등 수행
- (보건소) 지역 대학교와 위탁계약 체결, 주민홍보, 조사수행 지원, 결과활용
- (책임대학교) 조사계획 수립, 조사원 교육·훈련, 조사수행, 자료수집, 분석, 통계집 작성



□ 수행절차

단계	질병관리본부	책임대학교	보건소
조사기획 (1~2월)	사업계획서 배포	업무협약 체결	업무계약 체결
(3~5월)	표준설문지 개발 (지표표준화분과)		
	표본설계 (표본설계분과)		
	질관리 방안 수립 (질관리 및 평가분과)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교육홍보분과)		
조사준비 (6~8월)	조사수행지침 개발 조사문항지침 개발	조사팀 구성 조사수행일정 수립	지역주민 홍보 가구선정통지서 발송
	책임대학교 담당자 및 조사원 교육자료 개발	책임대학교 교육 참여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전산지원시스템 오픈	조사대상 가구추출	
조사수행 (8~10월)	중앙콜센터 운영	권역콜센터 운영	비상연락체계 운영
		조사수행 및 자료전송	
	조사현장방문	조사현장방문 조사자료 모니터링	중앙 및 책임대학교 조사현장방문 지원
	조사완료건 전화점검 (제3기관 위탁)	전화점검결과 재확인 및 처리결과 보고	
자료분석 (11~12월)	입력자료 오류수정		
	분석용 DB 배포 책임대학교 자료분석 교육	통계분석	
	표준통계양식 및 작성 지침 배포	시·군·구 통계집 작성	통계집 검독
	조사원수기공모전 개최 (교육홍보분과)		조사원수기공모전 입선자 시상식
익년 (1~2월)		시·군·구 통계집 발간	
	질관리 평가결과서 작성 (질관리 및 평가 분과)	질관리 및 평가결과 확인	질관리 및 평가결과 확인
익년 (3월)	사업계획서 배포		
	결과보고대회 개최	결과보고대회 참여	결과보고대회 참여

II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 운영위원회 및 책임대학교위원회 개최

일자	회의 명	내용
1.23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14년 사업계획 확정
3.20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014년 조사문항 구성
7.17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계획
4.24-4.25	책임대학교위원회 회의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문제점 및 향후계획 논의

□ 전문기술위원회 개최

○ 표본설계분과

일자	회의 명	내용
4.21	표본설계분과착수 회의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추출틀 작성 개선방안 -표본수 조정(감소) 가능방안

○ 질관리 및 평가분과

일자	회의 명	내용
1.17	질관리 및 평가분과 1차 회의	2013 질관리평가지표 검토 및 논의
2.28	질관리 및 평가분과 2차 회의	2013 조사수행기관 질관리평가 결과 검토
6.27	질관리 및 평가분과 3차 회의	2014 조사수행을 위한 질관리 방안 검토
7.28	질관리 및 평가분과 4차 회의	2014조사수행을 위한 질관리 평가 방안 및 건의사항 검토
8.07	질관리 및 평가분과 5차 회의	전화점검방법 및 조사문항 논의
9.23	질관리 및 평가분과 6차 회의	책임대학교 조사원 교육현장점검결과 평가 및 전화조사 진행상황 검토
12.12	질관리 및 평가분과 7차 회의	2014년 조사수행기관 질관리 평가 지표 선정방안 검토

○ 자료활용분과

일자	회의 명	내용
1.10	자료활용분과 2014년 1차 회의	-2014년 분과 추진계획 검토 -2013년 자료활용 우수기관 선

		정 기준 논의
2.3	자료활용분과 2014년 2차 회의	-결과보고대회 선정기준 논의 학술연구결과

○ 교육홍보분과

일자	회의 명	내용
12.10	교육홍보분과 1차 회의	'14년 조사원수기공모 최종심사

○ 지표표준화분과

일자	회의 명	내용
1.14	지표표준화분과 1차 회의	'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지(안)
12.12	지표표준화분과 2차 회의	'15년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 수요도 조사 결과

□ 조사기획

일자	내용
2.24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계획 알림
4.24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요청(1차)
6.16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요청(2차)
7.02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재요청(2차)
6.05	조사문항 확정알림
7.08	조사수행 및 조사문항 지침서 개발

□ 조사수행 정도관리

일자	내용
7.14~8.11	조사원 교육현장(35개 책임대학교) 점검
8.16~10.31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
8.23~9.19	조사현장방문(17개 권역 23개 보건소)

□ 교육 및 홍보

일자	내용
5.30	건강가족 선정(응모 11건, 건강가족 - 서울)
5.30	표어 선정(응모 236건, "씨 뿌리는 건강조사 꽃 피우는 지역건강")
7.04-7.05	책임대학교 담당자 교육 워크숍
7.12	지침서 및 홍보물품 배포
10.20~11.16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공모(64편 응모)
11.18~11.26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1차 심사(29편 선정)
12.10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2차 심사(15편 선정)

12.12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최종 결과발표
12.18~12.19	책임대학교 자료 분석 워크숍

□ 자료분석 및 통계작성

일자	내용
'14.11.26	오입력 자료 수정 완료
'14.12.09	가중치 산출 완료
'14.12.10	시군구 건강통계집 작성을 위한 분석용 자료 배포
'14.12.17	시군구 건강통계집 작성을 위한 SAS syntax 배포
'14.12.18-19	책임대학교 자료분석 워크숍 개최
'14.12.18-31	SAS syntax 책임대학교 검토 및 의견 수렴
'15.01.07	SAS syntax 수정버전 배포
'15.01.14	시도 및 시군구 주요결과 배포

□ 연구사업

일자	내용	연구책임자
14.06.03~ 12.02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행태 지표(흡연, 음주)관련 영향요인 분석	홍지영(건양대학교)
'14.07.01~ '15.03.15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김호(서울대학교)
'14.03.05 ~12.15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지역특성자료 연계 및 결과활용 방안 연구	김동현(한림대학교)
'14.03.10 ~12.15	지역사회건강조사 가구방문 면접조사방법 개선방안 연구	이명진(한국조사연구학회)
'14.10.17 ~'15.2.16	지역사회건강조사기반 사회심리 및 안전인식도 조사	이순영(아주대학교)
14.07.01~ 14.12.31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표본설계 및 표본관리	이계오(한국조사연구학회)
14.08.13~ 14.12.12	지역사회건강조사 동읍면단위 통계생산 프로그램(알고리즘) 개발연구	이계오(한국조사연구학회)

Ⅲ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결과

□ 조사완료현황

- 응답완료 230,698건 중 유효응답수 228,712명(자료폐기 1,281건)
- 목표대비 100.4%완료('13년 228,781명, '12년 228,921명, '11년 229,226명, '10년 229,229명, '09년 230,715명, '08년 220,258명)

<2014년 지역별 조사완료 현황>

시도	목표수	응답수		자료폐기										
		전체	유효 응답	소계	표본 지점 대체	표본 가구 대체	전화점검			오입력 자료	책임 대학 자체 평가	응답자 요청 폐기	조사원 변경	기타
							조사 미참여	대리 응답	CAP 미사용					
전국	227,721	230,698	228,712	1,986	86	239	4	48	3	98	344	14	949	201
서울	22,975	23,249	23,030	219	35	36	-	5	-	2	20	3	83	35
부산	14,562	14,909	14,579	330	17	45	-	-	-	6	4	1	254	3
대구	7,322	7,347	7,336	11	-	-	-	-	-	-	6	1	3	1
인천	8,998	9,054	9,010	44	-	7	-	4	-	1	21	2	2	7
광주	4,579	4,634	4,619	15	-	4	-	1	-	2	8	-	-	-
대전	4,585	4,612	4,593	19	-	1	-	4	-	-	1	-	-	13
울산	4,567	4,591	4,577	14	-	6	-	1	-	-	5	-	1	1
세종	931	939	934	5	-	1	-	-	-	-	-	-	-	4
경기	41,033	41,392	41,192	200	9	43	2	8	-	22	37	1	7	71
강원	15,851	15,998	15,906	92	7	6	-	4	1	1	27	-	25	21
충북	11,576	11,660	11,597	63	-	13	-	4	-	12	18	5	2	9
충남	13,470	13,669	13,521	148	-	1	2	5	1	1	118	-	4	16
전북	12,418	12,522	12,481	41	6	9	-	5	-	1	9	-	9	2
전남	19,589	20,025	19,769	256	-	15	-	1	1	6	7	-	220	6
경북	22,222	22,340	22,283	57	1	4	-	1	-	6	26	-	15	4
경남	17,992	18,500	18,053	447	11	42	-	5	-	34	30	1	318	6
제주	5,051	5,257	5,232	25	-	6	-	-	-	4	7	-	6	2

□ 분야별 수행결과

- (순환조사체계 운영과 조사지표개발)지역사회건강조사 제2기(2014-2017) 순환조사체계 1차년도 조사완료(168개 문항조사, 127개 지표산출), 17개 시·도 단위 지역선택조사 도입
- (온라인지표뱅크 개발)수요도조사시스템, 지표검색시스템 개발완료
- (표본설계 및 관리)도로명 주소 전환이 불가한 주소 삭제 후 표본추출틀 업데이트
- (CAPI 및 웹지원 시스템)CAPI 시스템과 웹지원시스템 운영서버를 단일화하여, 조사원별 조사진행현황 및 조사내역 실시간 확인
- (전화점검 강화)조사자료의 품질점검을 위하여 조사완료자료의 10%를 계통추출하여 제 3기관 전화점검을 실시, 총 23,675건(104%) 완료, 평균 4.2일 소요('13년 평균 1.4일, '12년 평균 2.1일, '11년 4.2일, 10년 8.7일)
- (콜센터 운영)17개 권역 책임대학교 모두가 참여하였고('12.8.16-10.31), 중앙콜센터와 권역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수행 상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 조사기간 동안 문의는 총 4,029건으로 3,961건이 처리(처리완료율 98.3%)되었으며, 주요문의내용은 표본선정(60.2%), 조사문항(28.2%), CAPI(5.4%)순
- (조사원 교육현장점검)총 5주간('14.7.14-8.11)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 34개 책임대학교의 조사원 교육현장 방문 점검, 표준 교육 프로토콜 개발 및 지침서 개발
- (조사수행 모니터링 유지) 권역콜센터 전담인력배치와 기능강화로 권역콜센터 실시간 문제해결 및 조사표와 조사과정과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조사수행과정 관리) 조사현장 점검을 통한 조사원의 조사수행지침 준수 여부 파악 및 조사원의 오류사항 교정, 조사수행 전 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질관리 도모를 위해 책임대학교 자체점검표 등 주별 모니터링 실시
- (자료분석 교육) 2014년 시군구별 건강통계집 작성을 위한 작성지침 전

- 달, SAS를 이용한 자료분석 교육, 가중치 산출 및 표준화 방법 교육 실시
- (원시자료 공개)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및 이용지침서 공개
- (홍보) 전국 및 지역단위 홍보와 대국민 홍보홈페이지 리뉴얼

□ 향후 개선과제

- (조사표 설계) 조사문항 타당도 평가(지표표준화분과위원회) 시 표준 프로토콜 마련, 시군구 단위 지역선택조사 확대에 대비한 조사문항 pool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 (온라인지표뱅크시스템) 수요도조사시스템, 지표검색시스템의 사용자 친화적 방법으로서의 이용환경 개선, '15년 설문지작성시스템 개발('16년 도입)
- (CAPI 및 질병통합시스템) 태블릿 PC 도입 가능여부 검토 및 시범 운영
- (전화점검 모니터링 및 콜센터 운영)
 - (전화점검 수행) 전화점검 결과와 부정조사 의심자료 진위 여부 일치도 향상을 위한 전화조사기관 질관리 강화, 부정조사 의심자료의 책임대학교 자체점검 및 부정조사 조사원 처리 프로토콜(수행지침) 표준화 방안 필요
 - (콜센터 운영)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콜센터 게시판을 통해 콜센터 및 책임대학교 간 상담내역 공유높일 수 있도록 자주하는 상담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 (책임대학교 담당자 교육 및 조사원 교육)
 - (표준 교육 프로토콜 개발) '08-'14년 책임대학교 담당자 교육 및 조사원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교육계획 수립, 책임대학교 담당자교육 워크숍을 통해 조사원 교육 및 조사관리 역량 강화, 조사원 교육 전반에 대한 가이드 제공을 통해 교육수준 제고
 - (교육현장 점검결과 활용증대) 조사원 교육현장점검 결과를 조사수행기관 질관리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지표 개발, 조사원 교육현장점검방식 개편
- (홍보)
 - 조사협조 및 조사수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 전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홍보(TV방송, 인터넷, SMS 등) 필요

□ 추진방향

○ 제2기(2014-2017) 2차년도 순환조사항목 추가개발

- 간접흡연의 폐해, 무연담배 및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 등 흡연 패러다임의 변화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 측정을 위한 흡연조사항목 확대강화
- 1년·2년·4년 주기의 전국공통문항과 지역선택문항으로 구성
- 순환지표 및 문항 검토를 위한 지표표준화분과위원회 상시 운영

○ 온라인지표뱅크시스템 공개

- '15년 상반기 대국민 지표검색시스템을 통한 지역보건지표 공개
- 수요도조사시스템을 통한 '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 수요도 조사 연중 실시

○ 위탁기관 수행능력 균질성 및 질관리 개선

- 내·외부 검증체계도입을 통한 감시기능 유지
- 현행 17개 권역 조사현장방문이 아닌 35개 책임대학교 조사현장방문을 통해 보다 폭넓게 책임대학교 및 조사원 질관리 향상 도모
- 표준화된 조사지침 전달을 위한 질관리 핸드북 작성 배포
특히, 동일한 문제건 발생 시 처리방안에 대한 지침 표준화 개발
- 조사수행과정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과정 개발

○ 조사신뢰성 검증을 위한 전화점검 개선

- 조사자료 재검증 : 조사완료자료 10%를 임의추출하여 제3기관을 통한 전화점검 실시, 전화점검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책임대학교에 피드백, 책임대학교에서 문제조사 건에 대하여 진위확인 및 조치

- 문제조사 건 자료와 책임대학교 자체점검 결과와의 일치율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 원시자료 활용을 위한 지자체 결과활용 촉진

- 원시자료('11, '12)를 공개를 통해 17개 시·도 및 253개 시·군·구 보건소의 보건사업계획 수립, 평가, 신규사업 활용 촉진
- 지역 간 변이, 사회계층간 변이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되도록 학술활동 장려
- 지역사회건강조사 활용사례 공유를 위한 권역보고대회 강화와 우수기관 표창확대

□ 분야별 세부추진방안

○ 표본설계 및 표본틀 개선

- 모집단 및 조사대상
 -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 시·군·구별 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 주거용 주택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 주거용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 주거용 건물 내 주택
※ 주택 이외의 주택(조사제외) :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기타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 표본추출 단위
 - 표본추출틀: 주민등록주소자료와 국토해양부 주택유형자료 연계하여 작성
 - 1차 표본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통·반/리(표본지점)
 - 2차 표본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가구

- 적정 표본수 산출

- 동/읍·면, 주택유형(아파트, 주택)별 가구수와 인구수 집계
- 시·군·구별 만19세 이상 인구 및 가구 수를 토대로 표본 수 산정
- 일정한 목표오차(±3%)로 표본크기 산출 : 보건소별 평균 900명

- 표본가구 선정

구분	2008~2009	2010~2015
표본추출틀 작성	보건소 작성 질병관리본부 취합, 정리	질병관리본부 작성
표본지점 선정	엑셀(Excel) 파일로 배포 책임대학교에서 웹지원시스템에 등록	웹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배포 및 자동등록
표본지점 교체	E-mail로 승인요청	웹지원시스템으로 승인 요청
표본가구 선정	지침에 따라 수기로 선정	웹지원시스템에서 자동 선정
표본가구 교체	조사원 보고에 대한 검토 후 대체가구를 유선으로 통보	예비가구가 사전에 등록 조사원 보고 후 승인 교체
조사가구수	표본지점별 5가구 조사	보건소, 동/읍·면별 가구수 차등

○ 조사지 개발

- 전국공통조사 기준, 총 18개 영역 173개 조사문항, 139개 산출지표 구성
- 지역선택지표 수는 전국공통지표 수의 10% 내외 수준에서 유지

조사영역	조사문항				산출지표			
	1년	2년	4년	소계	1년	2년	4년	소계
1. 흡연	13	5	0	18	9	5	0	14
2. 음주	7	0	1	8	7	0	1	8
3. 안전의식	10	0	1	11	7	0	1	8
4. 운동 및 신체활동	6	4	0	10	3	4	0	7
5. 식생활	7	0	0	7	5	0	0	5
6. 비만 및 체중조절	4	0	0	4	3	0	0	3
7. 구강건강	10	2	0	12	10	2	0	12
8. 정신건강	5	0	0	5	5	0	0	5
9. 예방접종 및 검진	3	0	0	3	3	0	0	3
10. 이환	32	3	6	41	24	3	6	33
11. 의료이용	2	0	0	2	2	0	0	2
12. 사고 및 중독	2	3	1	6	2	3	1	6
13. 활동제한 및 삶의 질	6	5	0	11	2	5	0	7
14. 보건기관 이용	1	0	0	1	1	0	0	1

15. 사회 물리적 환경	2	14	0	16	2	5	0	7
16. 개인위생	0	6	0	6	0	6	0	6
17. 교육 및 경제활동	6	0	0	6	6	0	0	6
18. 가구조사	5	0	1	6	5	0	1	6
소계	121	42	10	173	96	33	10	139

<제2기 순환조사체계 2차년도(2015)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표(안)>

※ 최종조사표 확정('15.2월중)

※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전국공통문항 및 17개 시도별 지역선택문항으로 구성된 전자조사표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별도의 조사표는 본 조사에서 병행하여 조사할 수 없음.

○ 전자조사표 제작일정

기간	일정	수행기관
2015. 3	지역선택조사 조사문항 수요도조사	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책임대학교
2015. 4	전국공통조사 전자조사표 제작	질병관리본부
	지역선택조사 조사문항 선정	시도 및 책임대학교
2015. 5	지역선택조사 전자조사표 제작	질병관리본부
2015. 6	지역선택조사 전자조사표 테스트	시도 및 책임대학교
	지역별 노트북 세팅 및 제작	마스터 CD 제작
2015. 7	노트북 테스트 및 배송	질병관리본부, 책임대학교

○ 조사시기 및 방법

- 조사 시기: '15.8.16~'15.10.31
- 조사 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1:1 면접 조사하는 방법

※CAPI :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조사원 선발, 교육 및 관리

- 조사원 선발
 - 책임대학교에서 조사원 모집 및 선발(보건소당 평균 4-6명)

※지역 여건에 따라 조사원 선발 규모 및 자격요건 조정

- 조사원 교육

- 질병관리본부의 중앙 교육을 이수한 담당자가 권역별 집체교육 또는 책임대학교별로 조사원 교육 진행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기초로 하여 자체추가개발 권장

- 조사원 관리

- 책임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원의 조사진행관리 및 조사자료 모니터링
- 보건소별, 책임대학별 정기 간담회 등 조사수행 중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정보 공유

○ 주민홍보

- 중앙 홍보

- 질병관리본부와 총괄대표대학교 담당
- 홍보물(동영상, 소책자, 리플릿 등) 제작 및 배포, 보도자료 배포
- 각종 인쇄 제작물, 조사원증 등 일괄 제작
- 타 부처 또는 기관, 관련단체의 행정지원 협조 요청

- 지역 홍보

- 시·도 및 보건소, 책임대학교 담당
- 지역 방송(TV),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지역 내 통·반/리장, 주민자치단체 등 오피니언리더 대상 홍보

○ 조사수행 및 지원

- 조사수행 : 조사원, 책임대학교, 보건소

- 조사대상가구 방문 1주일 이내 가구선정통지서 발송 및 도착하도록 하여 참여율 강화
- 가구원 부재 시에는 일시를 달리하여 3회 이상 재방문
- 표본가구대체율 감소를 위한 지역별 노하우 공유 및 전파

- 기존 운영된 권역콜센터는 지역별 권역 및 소권역 콜센터로 자율운영
- 조사지원 : 권역대표대학교, 질병관리본부
 - 표준화된 조사지침 전달 및 조사수행 전반에 관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권역 및 권역 콜센터 운영, 소권역 및 권역 콜센터에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중앙콜센터 이관 문제 해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콜센터 게시판을 통해 콜센터 및 책임대학교 간 상담내역 공유
- 조사수행과정 질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개선
 - 제3기관(전화점검기관) : 조사완료자료의 10%를 임의추출하여 전화점검 실시, 전화점검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책임대학교로 알림
 - 책임대학교 : 전화점검 결과를 파악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조사 자료폐기와 조사원 경고, 의심조사원 심층전화점검 실시 및 해고 조치
 - 질병관리본부 : 전화점검 결과와 부정조사 의심자료 진위 여부 일치도 향상을 위한 전화조사기관 질관리 강화 방안 모색 및 보다 정확한 진위확인을 위한 문제건 지표 선정 모색
 - 의심자료 진위 여부 확인 후 책임대학교 처리방법 표준화 모색
- 조사자료 검증 : 제3기관(전화점검기관), 책임대학교, 질병관리본부
 - 조사장비 임대 : 장비업체
 - 조사기간 중 신속한 A/S 대응을 위해 하나의 업체에서 동일한 기종의 조사장비를 선정하고, 책임대학교별로 업체와 임대(계약)를 진행
 - (업체선정) 전자조사표 테스트를 위해 4월 중으로 임대업체 선정 완료
 - (임대계약) 각 책임대학교에서는 보건소 당 선발된 조사원수를

결정하고 계약을 6월 말까지 완료(조사원 교육시기에 맞추어 7월 초 배송시작)

- 장비배포 및 조사자료 입력 : 책임대학교, 조사원

- 책임대학교에서 조사원에게 조사장비를 배포, 조사종료 후 수거
- 조사원은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조사자료 입력, 일일 단위로 자료전송
- 책임대학교 담당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일 단위로 조사진행 상황을 점검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 보내기/받기 소요시간 감축을 위한 기능 개선
- 조사자료 완전성 검증을 위한 조사완료건별 필수값 존재여부 확인 페이지 개발
- 조사원별 전자조사표 프로그램 버전 관리 페이지 개발

○ 조사장비 임대, 배포 및 수거

- 조사장비 임대 : 장비업체

- 조사기간 중 신속한 A/S 대응을 위해 하나의 업체에서 동일한 기종의 노트북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선정 업체와 임대(계약)를 진행
- (업체선정)지역선택문항의 테스트를 위해서는 임대 업체의 선정 4월 중으로 완료
- (임대계약) 각 책임대학교별로 계약하고, 보건소당 고용되는 조사원의 수가 유동적일 수 있어 4월 중 결정하는데 현실적 어려움. 책임대학교에서는 보건소당 조사원수를 결정하고 계약을 6월까지 완료(7월 14일부터 노트북 배송)

- 장비배포 및 조사자료 입력 : 책임대학교, 조사원

- 책임대학교에서 조사원에게 CAPI 장비를 배포, 조사종료 후 수거
- 조사원은 CAPI 장비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일일 단위로 전송

- 책임대학교 담당자는 웹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일일 단위로 조사 진행현황을 점검

○ 온라인 지역보건지표뱅크 운영

- 수요도조사시스템 운영(2015년 10월 공개예정)
- 시·도 및 시·군·구, 책임대학교, 기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건강조사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연중 상시로 운영
- 지표검색시스템 운영(2015년 6월 공개예정)
- 지역사회건강조사 대국민 홍보홈페이지(<http://chs.cdc.go.kr>)를 통해 보건지표 관련정보(지표정의, 산출식, 조사문항) 공개

○ 통계자료공표

- 「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작성 : 2016년 3월 결과보고대회 시
- 「시·군·구 건강통계집」 작성: 2016년 2월까지 완료
- 시·도 및 보건소, 질병관리본부로 당해연도 건강통계집 제출
- 자료를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파일(PDF 및 excel) 형태로 제공
-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 자료실에 게시
- KOSIS(국가통계포털) 게재: 2008년-2014년 주요 결과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별 결과 공개(2015년 5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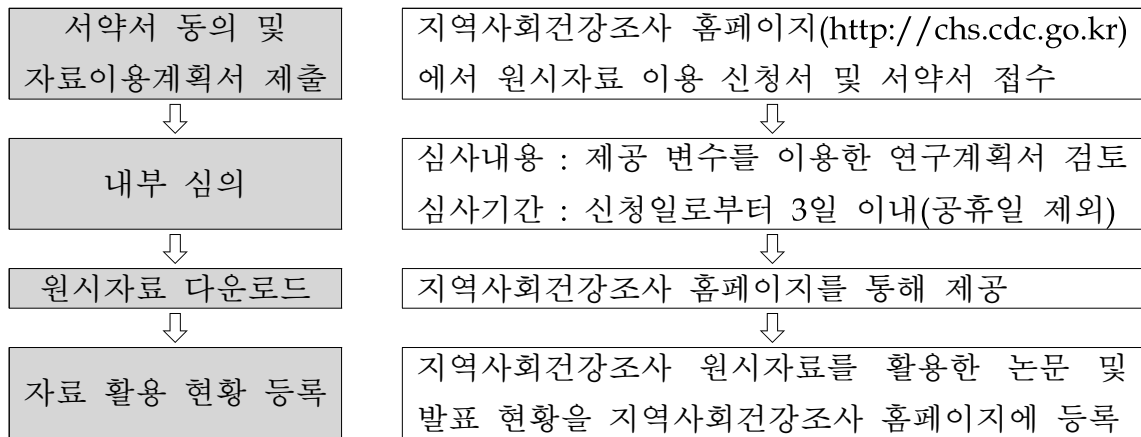
○ 원시자료 공개

- 조사완료 1년 후 공개로 기간 축소 (기존 조사완료 2년 후 공개)
- ※단, 공개전 해당 조사지역의 원자료(분석용 자료)는 책임대학교 교수 관리 하에 제한적 활용 허용
-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 및 활용규정」에 의거, 해당 신청

절차를 거쳐 원시자료(SAS 형태)와 이용지침서를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에서 다운로드

- 자료활용 결과 : 논문 및 활용결과물은 홈페이지 「자료활용 현황」에 등록

<원시자료 신청절차>



○ 연구사업 추진계획

-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모니터링 개선 방안 연구(7개월)

□ 추진일정

년	월	수행주체	세부과제
2015	1	질병관리본부 책임대학교	운영위원회 제 1차 회의 개최 (2014년 사업계획 수립) -조사수행결과 및 결과보고대회 일정 보고 -추진계획 및 책임기관평가계획 논의 시·군·구 통계집 작성
	2	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시·군·구 책임대학교	'15년 조사표 작성 위탁기관 질관리 평가 완료 및 통지 '15년 책임대학교·보건소협약체결(사업기간 '15.3.○~'16.2.28) 시·도 단위 비교통계집 작성
	3	질병관리본부	운영위원회 제 2차 회의 개최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시·도 단위 비교통계집) 작성 '14년 결과보고대회 개최
	4	질병관리본부	책임대학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15년 조사표 확정(중앙 및 지역) 조사수행 및 조사문항지침 개발
	5	질병관리본부	표본틀 작성 및 표본추출 -행정자치부·국토해양부 자료협조 -보건소별 표본추출틀 확보 및 표본추출 조사수행 및 조사문항지침 인쇄, 배포 조사원 교육훈련 지원 자료 개발
	6	질병관리본부 책임대학교	책임대학교 담당자 대상 중앙 집계 교육 조사원 선발
	7	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시·군·구 책임대학교	운영위원회 제 3차 회의 개최 주민 홍보자료, 인쇄물 배포 대중매체 홍보, 동/읍·면장, 통·반/리장 설명회 조사원 책임대학교별 교육(7~8월)
	8	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시·군·구 책임대학교	전화점검 수행(제3기관) 중앙콜센터 운영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8.16~10.31) 책임대학교 콜센터 운영
	9	질병관리본부 책임대학교	보건소 현장방문(9~10월) '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문항 수요도조사(8~10월) 조사수행 지원 및 조사현장 질 관리 모니터링
	10	질병관리본부	'15년 조사문항 지표정의 작성
	11	질병관리본부 책임대학교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실시 자료분석 계획 수립
	12	질병관리본부 책임대학교	분석용 자료 편집 완료 및 배포 -자료분석용 syntax 배포 -시·군·구 통계집 양식 및 작성지침 배포 책임대학교 담당자 자료분석 교육 자료분석 및 시·군·구 통계집 작성('15.12~'16.2)
2016	1~3	질병관리본부 책임대학교	자료분석 및 시·군·구 통계집 작성 시·도 단위 비교통계집 작성 '16년 운영위원회 제 1차 회의 개최 (2016년 사업계획 수립)
		질병관리본부	'15년 결과보고대회 개최

□ **소요예산: 총 11,89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예산보조구분 :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 지자체보조
- 예산과목 : 090-091-4800-4849-306
- 예산내역 : 시·군·구 주민건강통계 생산 지원

<2015년 예산 세부내역>

구분	세부내역
보건소당 평균 예산 46,826천원	1인당 총 경비 52,029원×평균 표본 수 900명 - 실제 예산은 할당된 조사표본 수에 따라 차등 지원
① 보건소 사업비 500천원	보건소당 500천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사용
② 지정위탁 사업경비 46,326천원	보건소당 평균 46,325천원 - 도서지역(예: 전남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신안군) 등 건당 조사비가 일반적인 지역보다 초과 소요되는 지역은 계약체결 시 세부내역 조정 가능 - (총괄공통경비)책임대학교 담당교수와 연구원 교육 및 워크샵, 홍보콘텐츠 공동개발 및 제작, 사업지침서 와 교육자료 공동제작 및 인쇄 등에 사용

※업무협약서와 사업비 집행지침은 붙임5, 붙임6 참조

□ **예산교부 및 집행**

-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붙임 12>” 및 “정부예산집행지침(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붙임 13>)”을 준수하여 관리
- 보조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도로 교부하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교부하며, 시·군·구에서 책임대학교에 교부
 - 책임대학에서는 사업비를 연도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 사업비는 <붙임6>의 ‘2015년 사업비 집행지침’의 비목별 상한액

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 변경 승인 요청

- 시·군·구에서는 10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 통보

※ 책임대학교에서는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사전에 협의

-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는 반납

○ 시·군·구의 보조사업비에 대한 결산보고는 2015.12.31.기준으로 각 시·도에서 질병관리본부로 2016.1.29(금)까지 보고

○ 책임대학교에서는 지역사회결과보고대회(2016.3월 예정) 종료 후 정산시 계약체결 보건소의 사업예산을 총괄 집행 및 정산보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계약체결 보건소에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개별정산 조치

○ 시·군·구는 책임대학교로 부터 정산서를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이를 총괄하여 2016.4.8(금)까지 최종 정산보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 <붙임 12>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환수, 강제 징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총괄공동경비 지출

○ 각 책임대학교는 사업비의 일부를 총괄공동경비로 지출가능

○ 총괄대표대학교는 각 책임대학교와 '총괄공동경비'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위임받아 집행

○ 총괄공동경비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대학교 담당교수와 연구원 교육 및 워크샵, 홍보콘텐츠 공동개발 및 제작, 사업지침서와 교육자료 공동제작 및 인쇄 등에 집행

○ 총괄공동경비의 정산은 사업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 협약체결

○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는 선정된 책임대학교와 협약을 체결

- 시·군·구 보건소는 책임대학교로부터 **2015.2.27(금)**까지 2015년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 협약서를 제출받아 협약체결 전 사전 검토
- 업무협약서 내용에는 사업목적, 사업범위, 사업기간, 사업비 지급, 보고서 제출, 수행사항 점검 및 다음의 사업일정 포함

《주요사업 일정》

- ① 협약기간: 2015년 3월○일 ~ 2016년 2월 29일
 ※협약개시일은 시·군·구의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② 사업 중간보고: 2016.1.29까지 제출(2015.12.31 기준)
- ③ 최종 결산보고: 2016.4.8까지 제출
- ④ 결과보고서 제출(건강통계집 PDF): 2016.2.29까지 제출
 ※결과보고서 인쇄물(건강통계집)은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2016.3.31) 제출
- ⑤ 응답자 조사참여 동의서: 책임대학교에서 5년간 보관

□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는 종이 등에 기록하거나 인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전화점검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쇄가 필요한 경우 이용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파기
- 책임대학교 담당자, 조사원은 보안서약서(붙임 9, 붙임 10)를 각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며 보안 서약서는 5년간 보관
- 질병관리본부는 책임대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개인정보 관리 교육 및 보건소와 책임대학교 현장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실시
- 전화점검 위탁사업
 - 개인정보는 조사의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전화점검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며 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 2월 29일 이후 일괄삭제
 -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조사내용의 별도 기록 및 PC,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CD, USB) 등 저장장치 보관 금지

□ 결과활용현황 작성보고

- 시·군·구는 보건정책수립 및 사업 수행 시 활용한 지역사회건강조

사 지표 및 관련 사업 내용을 작성<붙임 14>하여 2015년 5월 29
(금)까지 시·도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VI

2014년 결과보고대회(안)

□ 행사개요

- 목 적 :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결과 발표
- 기 간 : 2015.3.26-3.27(1박 2일)
- 장 소 :
- 참석자 : 약 750명
 - 질병관리본부 : 양병국 본부장 외 15명
 - 34개 책임대학교 교수 및 연구진, 자문위원 : 약 180명
 - 17개 시·도 보건과장, 담당관 등 : 약 50명
 - 254개 시·군·구 보건소 소장, 담당관 등 : 약 500명

□ 주요내용

- 첫째 날(3.26)
 - 개회식
 - 기조연설
 -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보고 및 2015년 추진계획
 -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관리 및 평가
 -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영역별 주요결과 보고
- 둘째 날(3.27)
 -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자료 활용
 - 시·도 및 시·군·구 우수사례발표 및 패널토의
 - 폐회식

□ 보도계획(안)

- 중앙보도 및 보도자료 배포는 결과보고대회 후
 - ※ 중앙보도 및 보도자료 배포 일정은 추후 공지하며, 시·도 및 시·군·구는 중앙보도 일시 이후 지역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체대응

□ 행정사항

- 결과보고대회 기본운영비는 각 책임대학교가 2014년 총괄대표대학교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 부담한 총괄공통경비에서 충당
-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 또는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정부기관 관계자,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에게는 발표수당 지급 제외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책임대학교, 질병관리본부 등록비는 자체 부담

□ 알림사항

- 권역대표대학교는 결과보고대회 전에 시·도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출
- 결과보고대회의 시·도별 발표자 명단 및 발표자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출
 - 시·도별 발표자는 가능하면 시·도 및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가 발표하는 것을 권장

【붙임 1】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 기본계획 수립

-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 및 인력개발 계획 수립('05.12.22)
- 지역사회 조사감시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지표 표준화 위원회 구성계획 수립('06.12.11)
-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07.5.26)

□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선정 및 확정내시 통보('07.1.23)
- 2007년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시범사업 실시('07.8~10)
- 2007년 시범사업 시·군·구 (20개) 건강통계집 발간('08.3)

□ 전국확대 실시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 책임대학교 간담회 개최(8~9월)
-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9.13)
- 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구성(11.07)
- 관계 기관 설명회(1.28)
- 운영위원회 개최(1차(3.07), 2차(5.28), 3차(7.21), 4차(11.06))
- 실행계획 수립(3.17)
-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지표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산출지표 반영 (결과지표 36개 중 24개, 5월)
- 전국 부시장·부지사회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소개(7.18)
- 표본가구 선정 및 관리를 위한 보건소 담당자 설명회(7.22)

- 책임대학교 조교 및 조사원 교육(1차 7.28~31, 2차 8.04~8.07)
-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총 220,248명 조사 완료, 9~11월)
- 책임대학교 자료분석 담당자 가중치 교육(11.12)
- 조사원 수기공모전 결과 발표(109편 응모, 15편 당선, 12.23)
- 결과보고대회 개최(3.25~3.26)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 운영위원회 개최(1차 2.12, 2차 6.23)
- 실행계획 수립(3.02)
- 책임대학교 교수회(5.01~5.02)
- 건강가족 및 표어 공모(6.10~7.03)
- 조사원 모집(6.29~7.24)
- 표본추출 행정자료 협조요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7.09)
- 책임대학교 조교 교육(7.29~7.31)
- 건강통계 활용방안 개발을 위한 워크숍(8.23)
- 책임대학교 조교 조사현장관리 및 입력교육(8.28)
-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총 230,716명 조사 완료, 9~11월)
- 책임대학교 및 보건소 현장점검(10.14~11.30)
- 조사원 우수·성공사례수기 공모전 (150편 응모, 15편 당선, 12.04)
- 책임대학교 조교 가중치 산출 및 자료분석 워크숍(12.21~12.22)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 운영위원회 개최(1차 1.19, 2차 7.08)
- 실행계획수립(2.23)
-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요청(행안부, 3.03)
- CAPI 책임대학교 사업설명회 및 자료분석 간담회(3.14)

-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미국 BRFSS 소개, 3.17)
- 결과보고대회(3.18~3.19)
- 보건사업 통합평가지표 반영(결과지표 36개 중 24개, 5월)
- 건강가족 공모개최 및 선정(6월)
- 표어 공모 개최 및 선정(6월)
- 책임대학교 조교 교육 실시(6.8~6.11)
- 조사원 모집(6.01~6.30)
- 교육현장점검 실시(7.01~8.12)
- 지역사회건강조사 라디오 광고 실시(8.01~10.21)
- 지역사회건강조사 CAPI 시스템 2차 교육(8.09)
- 지역사회건강조사 권역콜센터 및 책임대학교 2차 교육(8.13)
-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8.16~10.31)
- 지역사회건강조사 현장점검실시(8월~10월)
- 정기통계품질진단(통계청) 완료(10.19)
- 책임대학교 자료분석 담당자 교육(58명, 11.5)
-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11.01~11.14)
- 유공자 표창 후보자 선정 및 심의(11.15~11.2월)

<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 운영위원회 개최(1차 1.19, 2차 7.20, 3차 11.11)
- 책임대학교 교수회(5.01~5.02)
- 실행계획수립(3.08)
- 결과보고대회(3.30~3.31)
-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요청(국토해양부 4.10, 행정안전부 6.30)
- 지표수요도조사(4.13~4.20)

- 건강가족, 표어 공모개최 및 선정(5.28)
- 조사원 모집(6.07~7.01)
- 조사수행 및 조사문항 지침서 개발(6.30)
- 책임대학교 담당자 워크숍(7.04~7.05)
- 교육현장점검 실시(7.18~8.20)
- 지역사회건강조사 라디오 광고 제작(7.1) 및 송출(8.01~10.20)
-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8.16~10.31)
- 지역사회건강조사 현장점검실시(9.5~9.20)
- 책임대학교 담당자 자료분석 워크숍(11.25)
-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10.24~11.13)
- 유공자 표창 후보자 선정 및 심의('12.2.20~'12.03.02)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 운영위원회 개최(1차 1.16, 2차 4.19, 3차 7.17)
- 실행계획수립(2.13)
- 결과보고대회(3.21-22)
-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요청(안전행정부 5.22)
- 건강가족, 표어 공모개최 및 선정(5.31)
- 조사수행 및 조사문항 지침서 개발(6.26)
- 책임대학교 담당자 워크숍(6.26~6.29)
- 교육현장점검 실시(7.16~8.10)
- 지역사회건강조사 라디오 광고 제작(7.16) 및 송출(8.01~10.15)
-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8.16~10.31)
- 지역사회건강조사 현장점검실시(8.27~9.26)
- 책임대학교 담당자 자료분석 워크숍(12.17~12.18)

-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10.24~11.13)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 운영위원회 개최(1차 1.23, 2차 2.22, 3차 7.16)
- 책임대학교위원회 회의(5.9-5.10)
- 실행계획수립(2.13)
- 결과보고대회(3.19-20)
-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요청(안전행정부 4.16)
- 건강가족, 표어 공모개최 및 선정(5.31)
- 조사수행 및 조사문항 지침서 개발(7.10)
- 책임대학교 담당자 워크숍(7.02~6.29)
- 교육현장점검 실시(9.2-10.15)
- 지역사회건강조사 TV 홍보동영상 제작(7.12)
-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8.16~10.31)
- 지역사회건강조사 현장점검실시(8.27~9.26)
- 책임대학교 담당자 자료분석 워크숍(12.17~12.18)
-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10.21~11.17)

※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참고

【붙임 2】 2015년 책임대학교

권역	보건소 (개)	책임대학 (개)	정		부		비고
			대학	책임교수	대학	책임교수	
합계	254	35	-	35	-	49	
서울	25	3	인제대학	박노례	인제의대	강재현	총괄대표 권역대표
			서울대학	조성일	서울대학	조영규	
			경희대학	최증명	경희대학	성주헌	오인환
부산	16	2	부산대학	황인경	부산대학	윤태호	권역대표
			인제대학	손혜숙	고신대학 부경대학	김창훈 유병철 김윤희	
대구	8	1	경북대학	감 신	경북대학	김건엽	권역대표
인천	10	3	인하대학	이훈재	인하대학	황승식	권역대표
			연세대학	김현창	-	-	
			가천대학	임 준	가천대학	고광필	
광주	5	1	조선대학	한미아	조선대학	박 종	권역대표
대전	5	1	건양대학	이무식	건양대학	홍지영 배석환 황혜정	권역대표
울산	6	1	계명대학	이중정	계명대학	정인성	권역대표
세종	1	1	순천향대학	박윤형	순천향대학	이성수 서연옥	권역대표
경기 북부	21	3	한양대학	최보을	한양대학	신영전	권역대표
			서울대학	도영경	서울대학	이진석	
			가톨릭대학	이원철	가톨릭대학	임현우	
경기 남부	24	3	아주대학	이순영	아주대학	이경중	권역대표
			한림대학	배상수	한림대학	최용준	
			성균관대학	정해관	성균관대학	박재현	

권역	보건소 (개)	책임대학 (개)	정		부		비고
			대학	책임교수	대학	책임교수	
강원	18	3	관동대학	박응섭	관동대학	김보경	권역대표
			강원대학	조희숙	강원대병원 강원대학	오무경 정수미	
			연세대학(원주)	김춘배	연세대학(원주)	안양희 김남희	
충북	14	2	건국대학	장성훈	건국대학	이건세 김형수	권역대표
			충북대학	강길원	한국교통대학 충북대학	탁양주 박종혁 이영성	
충남	15	2	순천향대학	박윤형	순천향대학	이성수 서연옥	권역대표
			충남대학	이석구	충남대학	남해성	
전북	14	2	전북대학	고대하	전북대학	염정호 권근상 이주형	권역대표
			원광대학	오경재	원광대학	이영훈 이정미	
전남	22	2	전남대학	이정애	전남대학	신민호	권역대표
			조선대학	류소연	조선대학	박 중	
경북	25	3	대구기톨릭대학	박순우	대구기톨릭대학	김종연 황준현	권역대표
			영남대학	이경수	영남대학	황태운	
			동국대학	임현술	동국대학	김상규	
경남	20	2	인제대학	전진호	인제대학	엄상화	권역대표
			경상대학	박기수	경상대학	김록범	
제주	6	1	제주대학	김수영	-	-	권역대표

【붙임 3】 2015년 책임대학교별 조사지역

권역	보건소 (개)	책임대학교	책임 교수	조사지역(담당 보건소)
합계	254	-	-	
서울	25	인제대학	박노례	동대문구, 중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서울대학	조성일	강서구, 마포구,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경희대학	최중명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중랑구
부산	16	부산대학	황인경	금정구, 강서구, 동래구, 동구, 북구, 사상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인제대학	손혜숙	부산진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해운대구
대구	8	경북대학	감 신	남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 수성구, 서구, 중구, 동구
인천	10	인하대학	이훈재	계양구, 서구, 남구, 용진군, 중구
		연세대학	심지선	강화군
		가천대학	임정수	동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광주	5	조선대학	한미아	광산구, 북구, 서구, 남구, 동구
대전	5	건양대학	이무식	대전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	5	계명대학	이중정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세종	1	순천향대학	박윤형	세종시
경기 북부	21	한양대학	최보을	가평군,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서울대학	도영경	파주시, 과천시, 연천군,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톨릭대학	이원철	김포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원미구
경기 남부	24	아주대학	이순영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팔달구, 수원시영통구, 광주시, 성남시분당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한림대학	배상수	시흥시, 안양시동안구, 안양시만안구, 안성시,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처인구, 오산시
		성균관대학	정해관	의왕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화성군, 평택시, 평택시송탄,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장안구

권역	보건소 (개)	책임대학교	책임 교수	조사지역(담당 보건소)
강원	18	관동대학	박응섭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시, 고성군
		강원대학	조희숙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연세 원주대학	김춘배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홍천군
충북	14	건국대학	장성훈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제천시, 충주시, 증평군
		충북대학	강길원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청주시서원구, 옥천군, 영동군
충남	15	순천향대학	박윤형	당진시, 태안군,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홍성군,
		충남대학	이석구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계룡시, 서천군, 금산군, 논산시
전북	14	전북대학	고대하	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남원시, 진안군
		원광대학	오경재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정읍시
전남	22	전남대학	이정애	무안군, 영암군, 장흥군,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강진군, 해남군, 목포시, 진도군, 신안군
		조선대학	류소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
경북	25	대구 가톨릭대학	박순우	구미시구미, 구미시선산, 영천시, 안동시, 고령군, 청도군, 청송군, 봉화군
		영남대학	이경수	경주시, 경산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예천군
		동국대학	임현술	영주시,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의성군, 울릉군, 포항시남구, 포항시북구
경남	20	인제대학	전진호	창녕군,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창원, 함안군, 창원시 마산, 창원시 진해, 통영시, 거제시
		경상대학	박기수	거창군, 합천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제주	6	제주대학	김수영	제주시, 제주시동부, 제주시서부, 서귀포시, 서귀포시동부, 서귀포시서부

【붙임 4】 2015년 시·군·구 보건소별 사업예산

시도	보건소	표본수 (명)	확정내시		
			기금(50%)	지방비(50%)	합계(100%)
전국	-	227,721	5,947,000,000	5,947,000,000	11,894,000,000
서울특별시	합 계	22,968	599,668,000	599,668,000	1,199,336,000
	종로구	916	23,916,000	23,916,000	47,832,000
	중구	915	23,890,000	23,890,000	47,780,000
	용산구	918	23,968,000	23,968,000	47,936,000
	성동구	918	23,968,000	23,968,000	47,936,000
	광진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동대문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중랑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성북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강북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도봉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노원구	920	24,020,000	24,020,000	48,040,000
	은평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서대문구	918	23,968,000	23,968,000	47,936,000
	마포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양천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강서구	920	24,020,000	24,020,000	48,040,000
	구로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금천구	918	23,968,000	23,968,000	47,936,000
	영등포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동작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관악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서초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강남구	920	24,020,000	24,020,000	48,040,000
송파구	920	24,020,000	24,020,000	48,040,000	
강동구	919	23,994,000	23,994,000	47,988,000	
부산광역시	합계	14,564	380,281,000	380,281,000	760,562,000
	중구	898	23,451,000	23,451,000	46,902,000
	서구	908	23,709,000	23,709,000	47,418,000
	동구	906	23,658,000	23,658,000	47,316,000
	영도구	909	23,735,000	23,735,000	47,470,000
	부산진구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동래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시도	보건소	표본수 (명)	확정내시		
			기금(50%)	지방비(50%)	합계(100%)
	남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북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해운대구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사하구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금정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강서구	904	23,606,000	23,606,000	47,212,000
	연제구	912	23,813,000	23,813,000	47,626,000
	수영구	911	23,787,000	23,787,000	47,574,000
	사상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기장군	909	23,735,000	23,735,000	47,470,000
대구광역시	합계	7,321	191,147,000	191,147,000	382,294,000
	중구	908	23,709,000	23,709,000	47,418,000
	동구	917	23,942,000	23,942,000	47,884,000
	서구	915	23,890,000	23,890,000	47,780,000
	남구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북구	917	23,942,000	23,942,000	47,884,000
	수성구	917	23,942,000	23,942,000	47,884,000
	달서구	918	23,968,000	23,968,000	47,936,000
	달성군	915	23,890,000	23,890,000	47,780,000
인천광역시	합계	9,000	235,029,000	235,029,000	470,058,000
	중구	901	23,529,000	23,529,000	47,058,000
	동구	897	23,425,000	23,425,000	46,850,000
	남구	906	23,658,000	23,658,000	47,316,000
	연수구	905	23,632,000	23,632,000	47,264,000
	남동구	906	23,658,000	23,658,000	47,316,000
	부평구	907	23,684,000	23,684,000	47,368,000
	계양구	906	23,658,000	23,658,000	47,316,000
	서구	906	23,658,000	23,658,000	47,316,000
	강화군	896	23,399,000	23,399,000	46,798,000
	옹진군	870	22,728,000	22,728,000	45,456,000
	광주광역시	합계	4,581	119,607,000	119,607,000
동구		912	23,813,000	23,813,000	47,626,000
서구		917	23,942,000	23,942,000	47,884,000
남구		916	23,916,000	23,916,000	47,832,000
북구		918	23,968,000	23,968,000	47,936,000
광산구		918	23,968,000	23,968,000	47,936,000

시도	보건소	표본수 (명)	확정내시		
			기금(50%)	지방비(50%)	합계(100%)
대전광역시	합계	4,585	119,710,000	119,710,000	239,420,000
	동구	917	23,942,000	23,942,000	47,884,000
	중구	917	23,942,000	23,942,000	47,884,000
	서구	918	23,968,000	23,968,000	47,936,000
	유성구	917	23,942,000	23,942,000	47,884,000
	대덕구	916	23,916,000	23,916,000	47,832,000
울산광역시	합계	4,566	119,220,000	119,220,000	238,440,000
	중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남구	915	23,890,000	23,890,000	47,780,000
	동구	912	23,813,000	23,813,000	47,626,000
	북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울주군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세종특별자치시	합계	920	24,021,000	24,021,000	48,042,000
	세종시	920	24,021,000	24,021,000	48,042,000
경기도	합계	41,032	1,071,367,000	1,071,367,000	2,142,734,000
	수원시장안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수원시권선구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수원시팔달구	912	23,813,000	23,813,000	47,626,000
	수원시영통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성남시수정구	912	23,813,000	23,813,000	47,626,000
	성남시중원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성남시분당구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의정부시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안양시만안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안양시동안구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부천시원미구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부천시소사구	912	23,813,000	23,813,000	47,626,000
	부천시오정구	912	23,813,000	23,813,000	47,626,000
	광명시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평택시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송탄시	911	23,787,000	23,787,000	47,574,000
	동두천시	908	23,709,000	23,709,000	47,418,000
	안산시상록구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안산시단원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고양시덕양구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고양시일산동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시도	보건소	표본수 (명)	확정내시		
			기금(50%)	지방비(50%)	합계(100%)
	고양시일산서구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과천시	904	23,606,000	23,606,000	47,212,000
	구리시	912	23,813,000	23,813,000	47,626,000
	남양주시	915	23,890,000	23,890,000	47,780,000
	오산시	912	23,813,000	23,813,000	47,626,000
	시흥시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군포시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의왕시	911	23,787,000	23,787,000	47,574,000
	하남시	910	23,761,000	23,761,000	47,522,000
	용인시처인구	912	23,813,000	23,813,000	47,626,000
	용인시기흥구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용인시수지구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파주시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이천시	912	23,813,000	23,813,000	47,626,000
	안성시	911	23,787,000	23,787,000	47,574,000
	김포시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화성시	914	23,864,000	23,864,000	47,728,000
	광주시	913	23,839,000	23,839,000	47,678,000
	양주시	912	23,813,000	23,813,000	47,626,000
	포천시	911	23,787,000	23,787,000	47,574,000
	여주군	909	23,735,000	23,735,000	47,470,000
	연천군	898	23,451,000	23,451,000	46,902,000
	가평군	903	23,580,000	23,580,000	47,160,000
	양평군	908	23,709,000	23,709,000	47,418,000
강원도	합계	15,855	414,138,000	414,138,000	828,276,000
	춘천시	895	23,374,000	23,374,000	46,748,000
	원주시	895	23,374,000	23,374,000	46,748,000
	강릉시	894	23,348,000	23,348,000	46,696,000
	동해시	889	23,219,000	23,219,000	46,438,000
	태백시	881	23,012,000	23,012,000	46,024,000
	속초시	888	23,193,000	23,193,000	46,386,000
	삼척시	887	23,167,000	23,167,000	46,334,000
	홍천군	886	23,141,000	23,141,000	46,282,000
	횡성군	880	22,986,000	22,986,000	45,972,000
	영월군	878	22,934,000	22,934,000	45,868,000
	평창군	880	22,986,000	22,986,000	45,972,000

시도	보건소	표본수 (명)	확정내시		
			기금(50%)	지방비(50%)	합계(100%)
	정선군	878	22,934,000	22,934,000	45,868,000
	철원군	881	23,012,000	23,012,000	46,024,000
	화천군	866	22,624,000	22,624,000	45,248,000
	양구군	864	22,573,000	22,573,000	45,146,000
	인제군	873	22,805,000	22,805,000	45,610,000
	고성군	871	22,754,000	22,754,000	45,508,000
	양양군	869	22,702,000	22,702,000	45,404,000
충청북도	합계	11,596	303,099,000	303,099,000	606,198,000
	청주시상당구	835	21,823,000	21,823,000	43,646,000
	청주시홍덕구	837	21,875,000	21,875,000	43,750,000
	청주시청원구	835	21,823,000	21,823,000	43,646,000
	청주시서원구	836	21,849,000	21,849,000	43,698,000
	충주시	836	21,849,000	21,849,000	43,698,000
	제천시	834	21,798,000	21,798,000	43,596,000
	보은군	819	21,410,000	21,410,000	42,820,000
	옥천군	826	21,591,000	21,591,000	43,182,000
	영동군	825	21,565,000	21,565,000	43,130,000
	진천군	827	21,617,000	21,617,000	43,234,000
	괴산군	821	21,462,000	21,462,000	42,924,000
	음성군	831	21,720,000	21,720,000	43,440,000
	단양군	816	21,333,000	21,333,000	42,666,000
	증평군	818	21,384,000	21,384,000	42,768,000
충청남도	합계	13,467	351,691,000	351,691,000	703,382,000
	천안시	907	23,684,000	23,684,000	47,368,000
	공주시	901	23,529,000	23,529,000	47,058,000
	보령시	900	23,503,000	23,503,000	47,006,000
	아산시	905	23,632,000	23,632,000	47,264,000
	서산시	903	23,580,000	23,580,000	47,160,000
	논산시	901	23,529,000	23,529,000	47,058,000
	계룡시	888	23,193,000	23,193,000	46,386,000
	금산군	893	23,322,000	23,322,000	46,644,000
	부여군	897	23,425,000	23,425,000	46,850,000
	서천군	894	23,348,000	23,348,000	46,696,000
	청양군	883	23,064,000	23,064,000	46,128,000
	홍성군	899	23,477,000	23,477,000	46,954,000
	예산군	898	23,451,000	23,451,000	46,902,000
	태안군	895	23,374,000	23,374,000	46,748,000

시도	보건소	표본수 (명)	확정내시		
			기금(50%)	지방비(50%)	합계(100%)
	당진시	903	23,580,000	23,580,000	47,160,000
전라북도	합계	12,423	324,467,000	324,467,000	648,934,000
	전주시	902	23,554,000	23,554,000	47,108,000
	군산시	900	23,503,000	23,503,000	47,006,000
	익산시	900	23,503,000	23,503,000	47,006,000
	정읍시	896	23,399,000	23,399,000	46,798,000
	남원시	893	23,322,000	23,322,000	46,644,000
	김제시	894	23,348,000	23,348,000	46,696,000
	완주군	894	23,348,000	23,348,000	46,696,000
	진안군	873	22,805,000	22,805,000	45,610,000
	무주군	872	22,779,000	22,779,000	45,558,000
	장수군	869	22,702,000	22,702,000	45,404,000
	임실군	876	22,883,000	22,883,000	45,766,000
	순창군	876	22,883,000	22,883,000	45,766,000
	고창군	889	23,219,000	23,219,000	46,438,000
	부안군	889	23,219,000	23,219,000	46,438,000
전라남도	합계	19,587	511,557,000	511,557,000	1,023,114,000
	목포시	902	23,554,000	23,554,000	47,108,000
	여수시	902	23,554,000	23,554,000	47,108,000
	순천시	902	23,554,000	23,554,000	47,108,000
	나주시	896	23,399,000	23,399,000	46,798,000
	광양시	900	23,503,000	23,503,000	47,006,000
	담양군	888	23,193,000	23,193,000	46,386,000
	곡성군	879	22,960,000	22,960,000	45,920,000
	구례군	876	22,883,000	22,883,000	45,766,000
	고흥군	893	23,322,000	23,322,000	46,644,000
	보성군	887	23,167,000	23,167,000	46,334,000
	화순군	893	23,322,000	23,322,000	46,644,000
	장흥군	885	23,115,000	23,115,000	46,230,000
	강진군	885	23,115,000	23,115,000	46,230,000
	해남군	894	23,348,000	23,348,000	46,696,000
	영암군	891	23,270,000	23,270,000	46,540,000
	무안군	895	23,374,000	23,374,000	46,748,000
	함평군	882	23,038,000	23,038,000	46,076,000
	영광군	891	23,270,000	23,270,000	46,540,000
	장성군	888	23,193,000	23,193,000	46,386,000

시도	보건소	표본수 (명)	확정내시		
			기금(50%)	지방비(50%)	합계(100%)
	완도군	890	23,244,000	23,244,000	46,488,000
	진도군	881	23,012,000	23,012,000	46,024,000
	신안군	887	23,167,000	23,167,000	46,334,000
경상북도	합계	22,217	580,256,000	580,256,000	1,160,512,000
	포항시남구	902	23,554,000	23,554,000	47,108,000
	포항시북구	902	23,554,000	23,554,000	47,108,000
	경주시	902	23,554,000	23,554,000	47,108,000
	김천시	899	23,477,000	23,477,000	46,954,000
	안동시	900	23,503,000	23,503,000	47,006,000
	구미시	903	23,580,000	23,580,000	47,160,000
	구미시선산읍	893	23,322,000	23,322,000	46,644,000
	영주시	898	23,451,000	23,451,000	46,902,000
	영천시	897	23,425,000	23,425,000	46,850,000
	상주시	897	23,425,000	23,425,000	46,850,000
	문경시	894	23,348,000	23,348,000	46,696,000
	경산시	902	23,554,000	23,554,000	47,108,000
	군위군	872	22,779,000	22,779,000	45,558,000
	의성군	890	23,244,000	23,244,000	46,488,000
	청송군	875	22,857,000	22,857,000	45,714,000
	영양군	862	22,521,000	22,521,000	45,042,000
	영덕군	885	23,115,000	23,115,000	46,230,000
	청도군	887	23,167,000	23,167,000	46,334,000
	고령군	882	23,038,000	23,038,000	46,076,000
	성주군	887	23,167,000	23,167,000	46,334,000
	칠곡군	898	23,451,000	23,451,000	46,902,000
	예천군	887	23,167,000	23,167,000	46,334,000
	봉화군	881	23,012,000	23,012,000	46,024,000
	울진군	889	23,219,000	23,219,000	46,438,000
	울릉군	833	21,772,000	21,772,000	43,544,000
경상남도	합계	17,990	469,795,000	469,795,000	939,590,000
	창원시 창원	908	23,709,000	23,709,000	47,418,000
	창원시 마산	908	23,709,000	23,709,000	47,418,000
	진주시	908	23,709,000	23,709,000	47,418,000
	창원시 진해	905	23,632,000	23,632,000	47,264,000
	통영시	904	23,606,000	23,606,000	47,212,000
	사천시	903	23,580,000	23,580,000	47,160,000

시도	보건소	표본수 (명)	확정내시		
			기금(50%)	지방비(50%)	합계(100%)
	김해시	908	23,709,000	23,709,000	47,418,000
	밀양시	902	23,554,000	23,554,000	47,108,000
	거제시	907	23,684,000	23,684,000	47,368,000
	양산시	907	23,684,000	23,684,000	47,368,000
	의령군	883	23,064,000	23,064,000	46,128,000
	함안군	898	23,451,000	23,451,000	46,902,000
	창녕군	897	23,425,000	23,425,000	46,850,000
	고성군	896	23,399,000	23,399,000	46,798,000
	남해군	893	23,322,000	23,322,000	46,644,000
	하동군	894	23,348,000	23,348,000	46,696,000
	산청군	888	23,193,000	23,193,000	46,386,000
	함양군	890	23,244,000	23,244,000	46,488,000
	거창군	897	23,425,000	23,425,000	46,850,000
	합천군	894	23,348,000	23,348,000	46,696,000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5,049	131,947,000	131,947,000
	제주시	854	22,314,000	22,314,000	44,628,000
	서귀포시	848	22,159,000	22,159,000	44,318,000
	제주동부	835	21,823,000	21,823,000	43,646,000
	제주서부	844	22,056,000	22,056,000	44,112,000
	서귀포동부	839	21,927,000	21,927,000	43,854,000
	서귀포서부	829	21,668,000	21,668,000	43,336,000

【붙임 5】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협약서(예시)

과 제 명 : 00시(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협약 당사자

(갑) 00시(군) 보건소장

(을) 00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사업은 ○○시·도 ○○시·군·구 주민건강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의 내용)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운영을 “을”에 책임하고, “을”은 본 사업의 운영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기간)

본 협약기간은 2015년 3월 ○일부터 2016년 2월 29일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① “갑”과 “을”은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계약연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통계집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지급)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 _____만원(₩_____원)으로, “갑”은 “을”이 사업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조

기에 지급한다.

제6조(사업비관리, 집행의무, 부정수급에 대한 처리)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위탁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성실히 사업을 위하여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환수, 강제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운영 및 정산)

본 협약 체결에 따라 사업비 운영 및 정산은 기 제출하여 승인받은 첨부 계획서에 의거, “을”이 위탁받은 지역의 사업비를 통합 운영 및 정산하기로 한다(붙임 6. 2015년 사업비 집행지침).

제8조(총괄공통경비의 지출)

“을”은 교부받은 위탁사업비 중 일부를 동 사업을 위해 책임대학교 담당교수와 연구원 교육 및 워크숍, 홍보콘텐츠 공동개발 및 제작, 사업지침서와 교육자료 공동제작 및 인쇄 등의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① 사업을 타인에게 재 책임하는 행위
- ② 사업이행 중 또는 이행 후에 사업내용 및 결과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③ 본 사업의 결과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10조(준수사항)

“을”은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업수행 중 타 기관과 협의사항 발생시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수행 중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서류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조사대상자 개인정보 보호)

“을”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수집되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진실성 검증을 위한 전화 확인 점검)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유출해서는 안된다.
- ③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PC,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CD, USB 등)등 저장장치에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

제12조(보고)

“을”은 사업완료시 결과보고서(PDF)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완료 후 1개월 이내(16.3.31이전) 결과보고서 인쇄물(건강통계집)을 제출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2. “을”이 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갑”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때
- ② 협약 해지 시 “을”은 지급 받은 사업비 전액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이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갑”과 “을”이 본 협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에 따른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하고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15조(협약서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 6】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 협약서

1. 보조사업자명 :
2. 보조사업 대표자 :
3. 보조사업장
 - 대표자 :
 - 소재지 :
4. 보조사업 기간 : 2015년 0월 0일 ~ 2016년 0월 0일
5. 2015년도 보조금(천원)

사업명	총액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 위 (수행기관명칭)은 지역사회건강조사(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
○시·군·구) 보조금 조례, 사업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협약서로 제출합니다.

○ 아울러, 보조사업 수행의 부당 행위 또는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 귀하
(보건소 귀하)

【붙임 7】 2015년 사업비 집행지침

비목	산출기준	단가	비고
인건비(110)			상한 30%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1개월을 22일로 하여 적용	2,915,894/월 2,235,867/월 1,494,604/월	용역 참여율로 재산징
일반운영비(210)			상한 70%
① 인쇄비 보고서 인쇄비 회의자료 복사 각종 인쇄물 제작	50권		
② 전산처리비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③ 회의비 회의수당 ¹⁾ 회의경비 ²⁾	1) 내부연구원 및 사업참여 공무원은 계상 불가 2) 참석자 1인당 다과비 * 식비는 업무추진비에 계상		
④ 재료비 조사원 교육비 표본가구채집비 ¹⁾ 설문조사비 ²⁾ 자료분석관리비 조사장비 대여료 ³⁾ 현수막 제작비 응답자 답례품 ⁴⁾ 권역콜센터운영비	1) 가구명부 작성비용 2) 조사원 조사전당 비용 * 지급액 200,000원 이상부터 소득세 원천징수액(4.4%) 포함 3) 노트북 및 통신장비(4개월 대여) 4) 상품권	2) 14,000원 4) 5,000원	3) <붙임7 참조>
⑤ 교통통신비 택배요금(설문지 수거 등) 조사지역 시내 교통비 조사안내 우편료 조사안내 전화사용료		지역 여건에 따 라 책정	
여비(220)			상한 5%
숙박비 일 비(식비, 운임 포함)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책정 * 시내 교통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업무추진비 다과비(조사요원 및 교수진)			상한 5%
공동부담금 [총괄공동경비]	책임대학교 담당교수와 연구원 교육 및 워크샵, 홍보콘텐츠 공동개발 및 제작, 사업지침서와 교육자료 공동제작 및 인 쇄 등		상한 4%
일반관리비(산학협력단)			상한 5%
부가가치세			10%
총 계			-

※ 부가가치세 시행령(제 45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2조) 에 따라 사업비 내 부가세 적용

【붙임 8】 조사장비대여

○ 조사장비 대여 : 노트북, 통신장비, A/S

- 조사기간 중 신속한 A/S 대응을 위해 하나의 업체에서 동일한 기종의 노트북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선정 업체와 임대(계약)를 진행
- 선정기준 : 공개입찰을 통하여 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를 선정
- 평가위원 : 만성질환관리과장, 시도위원 2명, 책임대학교 위원 4명
- 임대기간 : 7월 16일 ~ 11월 15일 (4개월간)

※ 책임대학교별 조사원 교육 시 조사장비 지원

- 임대항목 : 노트북, 통신장비, Microsoft Windows, 원격접속 S/W*

*원격접속S/W

- ① 질병관리본부 및 책임대학교 담당자가 Client PC(노트북)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노트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접속 S/W 및 라이선스 제공(라이선스 : 80개)
- ② 원격접속S/W 선정 시, 접속방법이 간단한 프로그램(사용자가 40대~50대인 조사원임을 고려했을 때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주어 선정

○ 조사장비 주요사양

구분		사양	
통신장비	데이터 전송량	○1GB/월 이상	
노트북	H/W	모니터해상도	○1,280 × 768 이상
		본체+배터리무게	○1.7kg이하
		CPU	○듀얼코어 1.3GHz 이상
		메모리	○4GB 이상
		배터리	○6시간 이상 사용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S/W	필요 소프트웨어	○Internet Explorer7.0 혹은 Internet Explorer8.0 ○원격접속 S/W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한 S/W 탑재
		기타 설정	○조사용 프로그램 설치 지원
		A/S	H/W 문제시

※ 시스템 사양이나 프로그램 지원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9】 2014년 위탁기관 질관리 평가지표

지표명	지표정의
표본가구대체율	표본가구 중 조사적합 사유로 대체된 가구의 분율 ① 3회 이상 방문: 접촉불가(성인거주) ② 3회 이상 방문: 조사거부 ③ 기타 부적합사유 ④ 오입력 자료 ※ 표본가구대체율 미포함: 조사 부적합 사유 ① 3회 이상 방문: 접촉불가(성인거주모름) ② 만 19세 이상 성인 미거주 가구 ③ 비혈연 가구 ④ 실거주자없음(빈집, 비거주시설) ⑤ 의사소통불가(외국인 가정) ⑥ 접근불가(위험지역, 오벽지) ⑦ 행정자료 오류 ⑧ '08-'11 중복조사가구 ⑨ 기타 적합사유
가구완료율	조사가구 내 만19세 이상 성인 중 조사적격 가구원을 모두 정상완료한 가구의 분율 * 조사미수행사유 중 조사부적격 가구원 ① 만 19세 미만 ② 타지역 및 해외장기체류 ③ 장기입원 ④ 미귀화 외국인 ⑤ 건강문제로 인한 조사불가(치매, 장애 등) ⑥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불가 ⑦ 군복무중(의무복무) ⑧ 기타
조사완료율	목표 표본수 대비 유효응답자 수의 비율
응답거부율	응답자 중 가구소득, 키, 몸무게, 학력에 대한 응답거부 분율
응답일치도	본조사 응답과 전화확인조사 결과와의 일치도(5문항) 문항1. 본인인지 건강수준 문항2. 자동차 운전 여부 문항3. 수면시간 문항4. 최근2년간 건강검진 여부 문항5. 고혈압 의사진단경험여부
조사수행지침준수도	지표① 책임대학교 자체평가 제출 횟수 지표② 조사완료 업로드소요일 수 지표③ 조사소요시간 이상치의 비율(단시간) 지표④ 조사소요시간 이상치의 비율(장시간) 지표⑤ 조사현장점검률(신규 100%, 전체 70% 권고)

【붙임 10】 책임대학교 담당자 보안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본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무단으로 자료를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되는 개인정보는 PC,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CD, USB 등)등 저장장치에 일체 보관하지 않습니다.
3.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되는 개인정보는 종이 등에 기록하거나 인쇄하지 않으며, 부득이 인쇄가 필요한 경우 이용목적이 달성 되는대로 파기합니다.

서약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본 서약서 하단에서 수집하는 서약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서약서의 본인식별을 위해 수집되며,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보건소에서 이용합니다. 또한 서약일로부터 5년간 각 보건소에서 보관됩니다.

2015.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서 약 자 : (인)

_____ 보건소장 귀하

【붙임 11】 조사원용 보안서약서

서 약 서

본인 _____은(는)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위반 시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1. 조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 조사대상자의 조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3. 조사대상자의 수집된 정보를 조사수행과 관련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훼손, 침해, 누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5.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조사내용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6.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철회, 열람, 정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조사 기간 동안 조사 수행을 조기 그만 둔 후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위 1~7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73조, 제75조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조사 수행

1. 직무상 조사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따를 것이며, 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조사 업무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인해 폐기되는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수당을 받지 않으며, 기 지급된 조사수당은 반환합니다.

※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본 서약서 하단의 조사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서약서의 본인식별을 위해 수집되며,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보건소, 책임대학교에서 이용합니다. 또한 서약일로부터 5년간 각 보건소에서 보관됩니다.

2015. . .

서약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

(인)

_____ 보건소장 귀하

【붙임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2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개정 2011.7.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붙임 1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민간보조사업

1. 적용범위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

2. 세부지침

가. 중앙관서의 장의 책무

(1) 보조금 지원 제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2)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가능 사유 교부조건 명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불법시위 참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지원 제한 및 교부결정의 취소가능성을 명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3) 허위의 신청, 보조금 타용도 사용 확인시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에 대한 반환 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신고포상금 지급

○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제4편 참고자료〉의 I-4번' 참조

(5) 공모방식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및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 중 민간 위원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중복지원을 지양한다.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비를 여러 기관에 보조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배분기

준을 설정하여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보조금 반납·환수실적 및 실적집행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 아울러,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 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7)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확보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의 필요한 세부절차규정을 명시하여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에게 계약의 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후 당해 회계연도내에 보조사업자의 요건·자격을 재점검하고, 보조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8) 보조금 구분계리 및 이자발생 최소화

- 보조금 교부시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구분계리 하도록 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9) 보조금 정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자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자의 책무

(1)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 집행계획 마련 및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자부담 계획서 포함, 의무사항)을 마련 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첨부서류'를 의미한다.
-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하

계 할 수 있다.

- * 계산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3)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 통합 정보망(www.bojogeumjaesan.go.kr)에 상시 공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중요재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통합정보망을 통해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 현재액은 “공정가액”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단,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제외)
 -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근거한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사업수행 방식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붙임 14】 (시도 및 시군구 작성)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활용 작성양식(안)

주요 산출지표	○/X	관련 사업명	활용내용
현재흡연율			
남자현재흡연율			
매일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현재흡연자의1개월내금연계획률			
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률			
비흡연자의직장실내간접흡연률			
월간음주율			
고위험음주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동승차량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실천율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률			
비만율			
주관적 비만인지율			
체중조절시도율			
주관적 구강건강이 나쁜 인구의 분율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구강검진수진율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건강검진 수진율			
암 검진율			
만성급성질환 및 사고중독 경험률			
연간 평균 혈압 측정횟수			
연간 혈당 측정횟수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고혈압 약물치료율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당뇨병 치료율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			
관절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이상지질혈증평생의사진단경험률			
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연간 사고중독 경험률			
양호한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보건기관 이용률			
심폐소생술 인지율			